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정부의 소상공인시책 수립·시행 시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·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함(안 제3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윤 상 열)